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손윤목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1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여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도 명예도민으로 위촉(안 제2조제5호)
- 증서의 형태와 규격 등은 도지사가 정함(안 제5조제1항)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여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명예도민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임.

다만, 부적격자가 명예도민으로 선정될 경우 대외적 가치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확대에 따른 철저한 심의와 구체적인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